

굴뚝 원격감시체계 업무편람 新 · 舊 대조표

구분	쪽수 (기존)	변경 사항	개정 전	개정 후
II. 굴뚝 원격감시체계의 운영관리				
	p26	내용 수정	가.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 1) 자동측정기기의 부착대상시설 및 측정항목은 시행령 별표3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가) 신규부착시 업무수행 흐름도	가.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 1) 자동측정기기의 부착대상시설 및 측정항목은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령 별표3, 대기권역법 시행령 별표 3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가) 신규부착시 업무수행 흐름도 <변경내용 별도 첨부>
	p27	내용 수정	나) 측정기기 신규부착 시 업무 세부절차 (1) 관할 행정기관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시 (신고, 변경 등을 포함) 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한다. (2) 사업자는 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일까지 자동측정시스템의 부착을 완료하여 시·도지사에게 측정기기 부착완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자는 가능한 시운전기간(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일로부터 30일까지의 기간)이내에 정도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 (생략) (3) 사업자로부터 부착완료신고를 접수받은 관할 행정기관은 부착완료일로부터 3개월의 범위 내에서 행정자료 활용유예기간을 정하여 즉시 해당 사업장,	나) 측정기기 부착 시 세부 업무절차 (1) 관할 행정기관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총량관리 인·허가 시 (신고, 변경 등을 포함) 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한다. (2) 사업자는 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일 또는 측정기기 부착기한까지 자동측정시스템을 부착하고 관할행정기관에 측정기기 부착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자는 행정자료 활용유예기간 이내에 정도검사 및 통합·정도확인시험을 완료하여야 한다. - (생략) (3) 사업자로부터 부착완료신고를 접수받은 관할 행정기관은 부착완료 신고일로부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행정자료 활용유예기간을 정하여 즉시 해당 사업장,

		<p>관제센터 및 지도·점검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p> <p>(4) (생략)</p> <p>(5) 사업자는 신뢰성시험 수검 전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관리시스템에 아래의 서류들을 제출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증(신고필증) - 굴뚝 자동측정기기 관리카드 및 연간 유지관리 계획서 - 정도검사 기록부 및 점검표 - 표준가스 성적서 	<p>관제센터 및 지도·점검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p> <p>(4) (생략)</p> <p>(5) 사업자는 신뢰성시험 수검 전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관리시스템에 아래의 서류들을 제출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증(신고필증),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 사본 - 배출시설 등 설치운영허가 검토 결과서(통합허가 검토결과서) 사본 - 굴뚝 자동측정기기 관리카드 및 연간 유지관리 계획서 - 정도검사 기록부 및 점검표 사본(검사기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즉시 제출, 신뢰성시험 후 제출가능) - 표준가스 성적서 사본
p30	내용 추가	<p>(서식 1) 가상사설망 단말기(VPN Client) 설치 신청서</p>	<p>3) 관련 서식</p> <p>(서식 1)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완료 신고서 <별도 첨부></p> <p>(서식 2) 가상사설망 단말기(VPN Client) 설치 신청서</p>
p47	내용 수정	<p>4. 자동측정자료의 확정 및 행정자료 활용</p> <p>가. 자동측정자료의 행정자료 활용</p> <p>4) 자동측정기기 신규 부착완료 신고를 접수받은 관할 행정기관은 부착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행정자료 활용유예기간을 정하여 관제센터 및 지도·점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p>	<p>4. 자동측정자료의 확정 및 행정자료 활용</p> <p>가. 자동측정자료의 행정자료 활용</p> <p>4) 자동측정기기 신규 부착완료 신고를 접수받은 관할 행정기관은 부착완료 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행정자료 활용유예기간을 정하여 관제센터 및 지도·점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p>

3) 관련 서식

(서식 1)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완료 신고서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완료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0일
------	------	------	----------

신청인	상호(사업장명칭)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	(휴대전화 :)
	사업장소재지		
	업 종	종 별	
	주 생산품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완료 시설	굴뚝번호		측정항목	
	굴뚝번호		측정항목	
	굴뚝번호		측정항목	
	굴뚝번호		측정항목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의 부착완료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할 행정기관 귀하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 또는 「통합허가 검토결과서」 사본 1부. 2. 굴뚝 자동측정기기 관리카드 1부. 3. 연간 유지관리 계획서 1부. 4.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 관련서류(부착사진, 납품계약서 등) <p>※ 첨부서류 2번,3번은 사업장대기오염물질관리시스템 서식활용</p>	수수료 없음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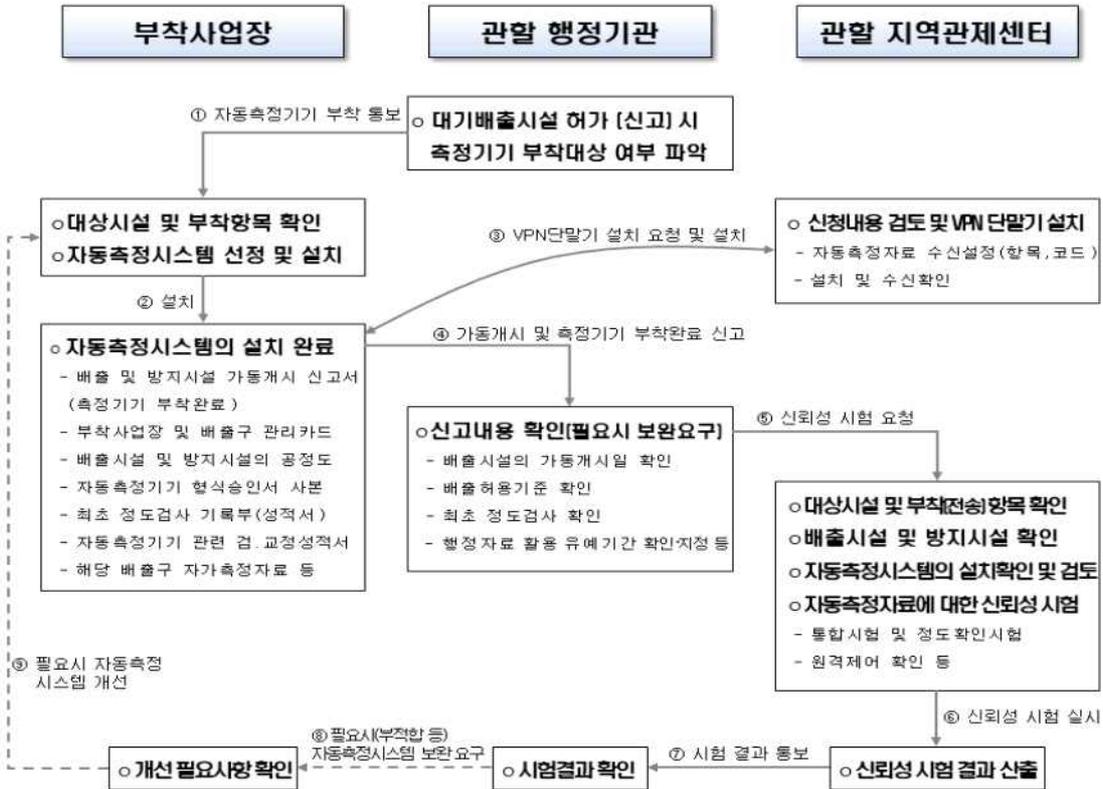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가) 신규부착 시 업무수행 흐름도

<변경 전>



<변경 후>

